

주식변동사항신고서

신고인 (등록 의무자)	성명(한글)	생년월일	휴대전화
	소속	직위	직급 등
	주소		

변동 내역	구분	종전	현재
	주식종목수	상장 / 비상장	상장 / 비상장
	보유총액	(천원)	(천원)

「공직자윤리법」 제6조의2 및 「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」 제3조제3항에 따라 주식거래내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신고인

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

첨부서류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위탁계좌번호, 주식의 거래일, 종목, 수량, 실거래가격 등이 기재된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위탁계좌원장 사본

작성방법

1. 변동내역

- 주식 종목수는 종전 재산신고 시 보유하고 있던 주식 종목 수와 재산등록일 기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 종목 수를 적으십시오(상장, 비상장 구분 기재).
- 보유 총액: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액을 합산하여 적으십시오.

업무 처리절차

이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